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(보관기간경과)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7. 11. 06.

경 주 시 장



자연공원법위반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고

1. 공고기간 : 2017. 11. 06. ~ 2017. 11. 21. (15일간)
2. 송달대상 : 이○천, 이○성
3. 송달내역

자연공원법 위반자		위반일자	위반내용	위반장소	과 태 료 부과금액	반송사유	공고기한	관련법규
성 명	주 소							
이○천	경주시 초당길31번길 *-* ***호	2017.08.05	취사행위	토함산 (추령다리밀)	103,000	보관기간 경과	2017.11.21	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
이○성	경주시 송삼1길 **, ***동 ***호 (용강동, ****아파트)	2017.08.02	취사행위	토함산 (추령다리밀)	103,000	보관기간 경과	2017.11.21	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

4. 문의처 : 경상북도 경주시 환경과(TEL:054-779-6365, FAX:054-760-7415)

5. 기 타

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부과되오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